

연구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2023.12

연구진

| | | |
|-----|------|-----------|
| 홍성진 | 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 박선구 | 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은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건설계약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 / 간 / 사

2021년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중간재 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 2021년 27.3%, 2022년 6.3%, 2023년 9월 기준 1.0%를 상승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노임, 장비임대료까지 상승하여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전년도 대비 2021년 14.0%, 2022년 7.0%, 2023년 9월 기준 3.4% 상승하였습니다.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갈등과 분쟁 나아가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있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다수의 전문건설업체는 협상력 차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도급 계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였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김 희 수

요약

〈지방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

| 요건 | 세부내용 | 색인 |
|--|--|--------|
|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 12~13p |
|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pm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단품슬라이딩=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가 15% 이상 상승 | 14~15p |
| ③ 절차상 요건 - 증액은 계약상대자(조합원), 감액은 발주기관의 조정청구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 필요 | 15p |
| 질의회신 | | 24~42p |

〈하도급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

| 유형 | 활용 방안 | 세부 내용 | 색인 |
|----------------------------|---|---|--------|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조정 요건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 계약 금액 증액+추가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상황의 변동: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 46~47p |
| | ② 조정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자에게 통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금액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비율·금액 등 구체적 통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 |
| | 질의회신 | | |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조정 요건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또는 공급원가 외의 비용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협의 의무 | 51~53p |
| | ②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능 | |
| | 질의회신 | | 54~55p |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 ① 조정 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원재료: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 가능 | 55~57p |
| | ② 조정 방법 -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 57~67p |
| | 질의회신 | | 68~77p |

목차

| | | |
|------------|---|-----------|
| 제1장 | 서론 | 1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 | 3. 연구의 구성 | 6 |
| 제2장 |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9 |
| | 1. 개요 | 11 |
| | 2. 활용 방법 | 12 |
| | 3. 질의회신 | 24 |
| 제3장 |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43 |
| | 1. 개요 | 45 |
| | 2. 활용 방법 | 46 |
| 제4장 |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방안 | 79 |
| | 1. 개요 | 81 |
| | 2. 활용 방법 | 82 |
| 제5장 | 시사점 | 85 |
| | 1. 단품 슬라이딩 기준 개선 필요 | 87 |
| | 2. 건설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필요 | 88 |
| |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대상 확대 | 90 |

| | |
|--------------------------------------|----|
| 참고문헌 | 92 |
| 부록1(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 93 |
| 부록2(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 97 |

표목차

| | |
|---|----|
| 〈표 1-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7 |
| 〈표 2-1〉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비교 | 16 |
| 〈표 2-2〉 품목조정률 산출 방법 | 18 |
| 〈표 2-3〉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 | 19 |
| 〈표 2-4〉 물가변동에 따른 정산항목 | 22 |
| 〈표 3-1〉 하도급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현황 | 45 |
| 〈표 3-2〉 주요 원재료의 유형 및 예시 | 56 |
| 〈표 3-3〉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의 비교 | 67 |
| 〈표 4-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각하 또는 조정 사유 | 83 |
| 〈표 5-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각하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 90 |
| 〈표 5-2〉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평균 처리기간 추이 | 90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계 .. | 12 |
| [그림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 13 |
| [그림 2-3]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 | 17 |
| [그림 3-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도식 | 47 |
| [그림 3-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도식 | 53 |
| [그림 3-3]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의 도식 | 57 |
| [그림 3-4]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 59 |
| [그림 3-5]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의 원자재 가격정보 .. | 60 |
| [그림 4-1] 조정·중재·소송의 비교 | 81 |
| [그림 4-2] 개별 법률상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 82 |
| [그림 4-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http://www.csdmc.or.kr/) | 82 |
| [그림 4-4]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 | 84 |
| [그림 5-1] 철근가격 추이(2021년 1월~12월) | 88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1년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자원 외교주의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 급등
 - 2021년 건설중간재 물가지수는 연간 27.3% 상승했으며, 이는 198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높은 상황
 - 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노임, 장비임대료까지 상승하여 건설공사비지수 상승폭 역시 상당한 수준

-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경기 부진, 수익성 악화, 건설현장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함
 -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2022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약 3% 감소
 - 공사비 증가로 건축허가 이후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줄어들어 건축착공은 2년 연속(2022년 18%, 2023년 9월 누계 40% 감소) 큰 폭으로 감소
 - 건설기업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자재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이 큰 상황
 - 또한, 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자재 공급자와 수요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내에서도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사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건설공사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됨

- 건설업은 대표적인 하도급 생산방식으로 종합건설사 하나가 도산하면 수십, 수백 개의 전문건설업이 동시에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건설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 또한, 가중된 자재가격 및 인건비로 인해 생산요소를 직접 조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불균형 문제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하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원도급공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최근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으나,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물가변동 등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함

- 주로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개별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부록에서는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소개

□ 본 연구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라 개별업체의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 지수조절률에 의한 방법
 -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 질의회신
- 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 질의회신
-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방안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각하 및 조정 사유
- 시사점 제시
 - 단품 슬라이딩의 기준 개선
 - 건설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대상 확대
- 부록에서 관련 법률 소개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분석자료 및 통계 등은 원칙적으로 2022년 말 자료를 활용
- 질의회신은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

□ 본 연구는 문헌검토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연구 경험자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문헌검토는 법률 검토 중심으로 실시
-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최근 동향 분석
- 전문가 등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제도 등 검토
- 보고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등

3.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됨

-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
- 2장에서는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법 제시
- 3장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법 제시
- 4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방법 소개
- 5장에서는 연구결과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

〈표 1-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구성 | 내용 |
|---------------------------------|--|
| 제1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
| 제2장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 요건 2) 조정 방법 3. 질의회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 요건 2) 조정 방법 |
| 제3장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회신 포함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회신 포함 3)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회신 포함 |
| 제4장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방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활용 방법 |
| 제5장 시사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품 슬라이딩의 기준 개선 필요 2. 건설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필요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대상 확대 |
| 부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2. 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II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1. 개요
- 2. 활용 방법
- 3. 질의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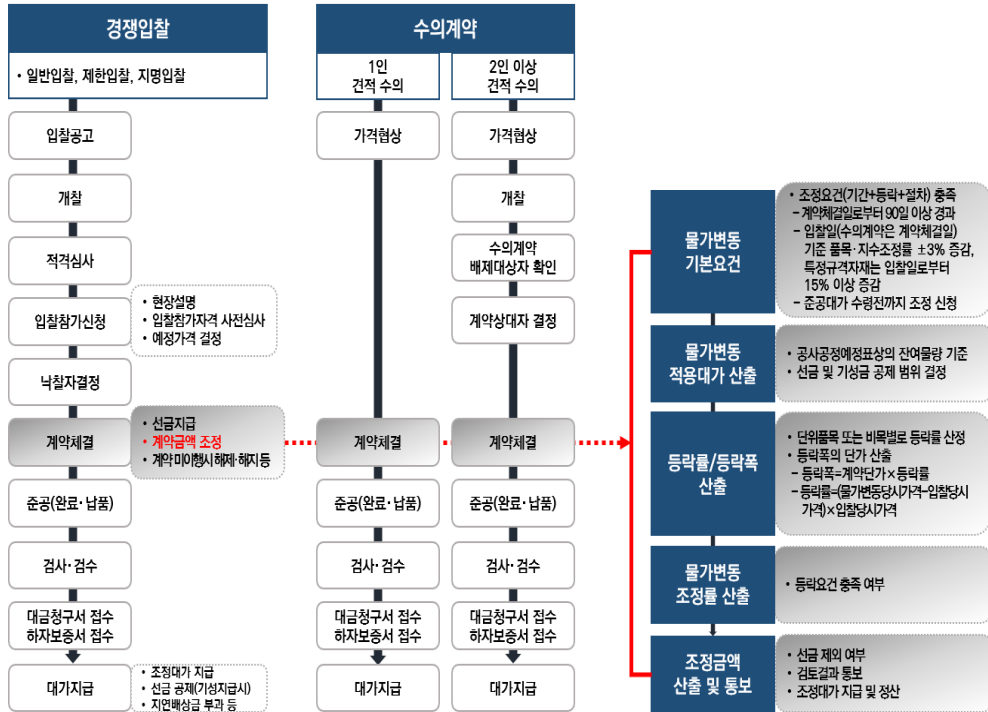
1. 개요

-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 22조 및 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이며,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주장 가능

- “국가계약법”에서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지방계약법”과 같음
 - 이하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설명

- “지방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변동에 따른 조정(ESC)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조정(단품슬라이딩)

- “지방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을 통하여 조정받을 수 있음
 - 다음 <그림 2-1>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계를 설명



[그림 2-1]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계

2. 활용 방법

1) 조정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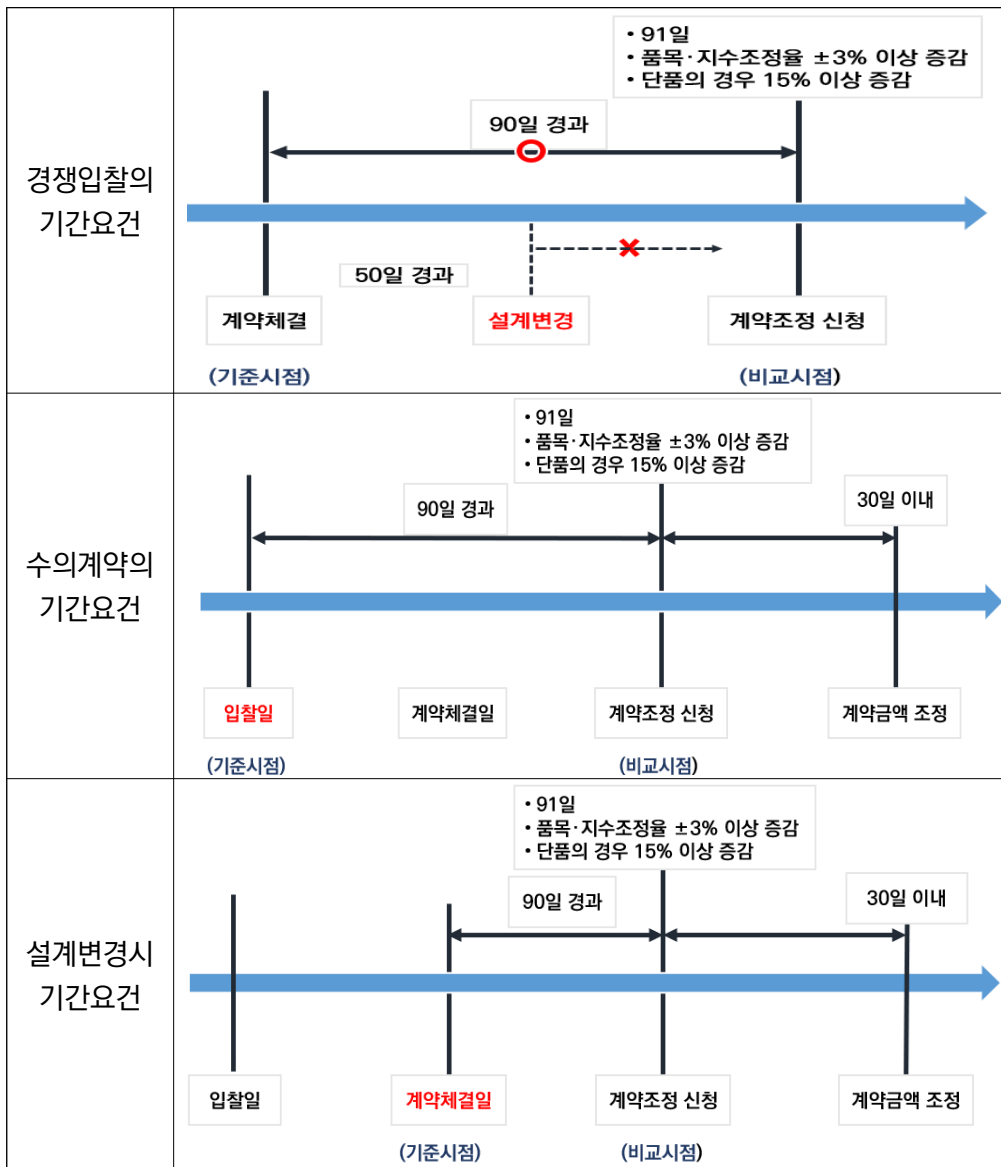
□ 기간요건+등락요건+절차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기간요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 ② 등락요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pm 3\%$ 이상,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가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
- ③ 절차상 요건: 증액은 계약상대자(조합원), 감액은 발주기관의 조정청구 필요
 -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 가능

(1) 기간요건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 경쟁입찰은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그림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함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항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2) 등락요건

□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어야 함

-
- 특정규격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단품슬라이딩)은 입찰일로부터 15% 이상 증감되어야 함

(3) 절차상 요건

- 증액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조합원), 감액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조정청구가 있어야 함
 -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 가능
 -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으로, 만약 예산이 부족한 경우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보전 가능
- 조정청구를 위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발주처(계약담당자)가 접수해야 함
 - 조정신청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
 - *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 가능

2) 조정 방법

(1) 조정방법 선택과 계약서 명시

-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 가운데 선택 및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름
 -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은 동시적용이 불가하며, 계약이행 중 조정방법 변경 불가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라 산정

〈표 2-1〉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비교

| 구분 |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
|----------|---|---|
| 개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 조정률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한 후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 산정 |
| 적용대상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 장점 |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용이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
| 단점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재 | 매 조정 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 |
| 용도 | 계약금액의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함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은 조정금액에서 제외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포함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 부기한 총 공사금액이 그 대상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출함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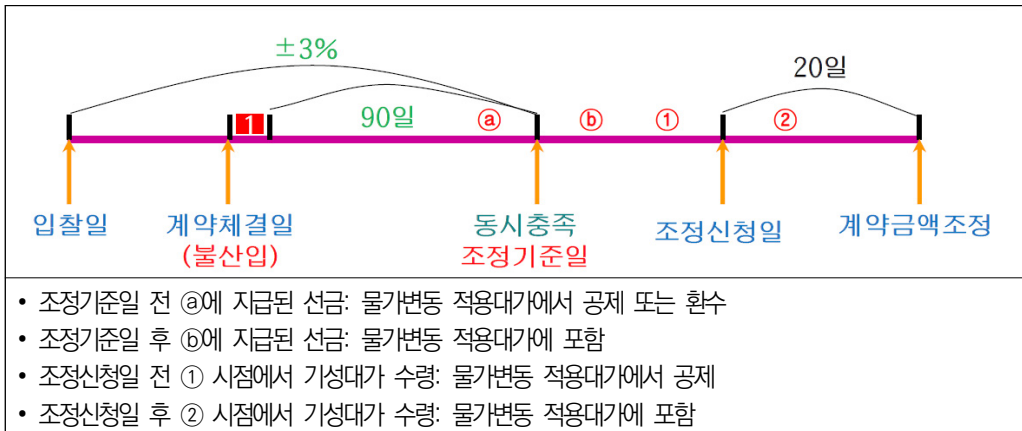
② 조정금액에서 선금공제 신청

-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된 선금은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공제 또는 환수함
-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됨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선금급률: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 계약금액
- ※ 장기계속공사계약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

③ 조정금액에서 기성금 공제 신청

- 조정신청일 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함
- 조정신청일 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됨



[그림 2-3]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

(2) 물가변동 조정률에 따라 등락률 및 등락폭 산출

① 품목조정률에 따른 산출 방법

□ 품목조정률에 따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 품목조정률 산출 방법

| 구분 | 품목조정률 |
|--------------|--|
| 관련 용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 등락폭 산정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가운데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계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 산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 산출 |
| 예시 | <p>계약단가 (90) 기준시점 (100) 비교시점 (120) ⇒ 등락폭 (18) = 90 x 20% $20\%(등락율) = (120-100)/100 \times 100$</p> <p>계약단가 (210) 기준시점 (200) 비교시점 (240) ⇒ 등락폭 (30) = 240 - 210</p> <p>계약단가 (370) 기준시점 (300) 비교시점 (360) ⇒ 등락폭 (0)</p> |

② 지수조정률에 따른 산출 방법

□ 지수조정률에 따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3〉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

| 구분 | 품목조정률 |
|-------|--|
| 관련 용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시〉</p> <p>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p> <p>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p> <p>C : 광산품</p> <p>D : 공산품</p> <p>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p> <p>F : 농림·수산물</p> <p>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o: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o)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p> <p>H : 산재보험료</p> <p>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p> <p>J : 고용보험료</p> <p>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p> <p>L : 국민건강보험료</p> <p>M : 국민연금보험료</p> <p>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p> <p>Z : 그 밖의 비목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 •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구분 | 품목조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p> <p>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0 = A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H1 = A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I0 = \text{변동 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전 재료비계수=c+d+e+f - $I1 = \text{변동 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후 계수=변동 전 계수×지수변동률 <p>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p> <p>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치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0 = (aA0+cC0+dD0+eE0+fF0+gG0) / \text{비목군수}$ - $Z1 = (aA1+cC1+dD1+eE1+fF1+gG1) / \text{비목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그 밖에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예시</p>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h>구분</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d>구분</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 수표기관 : 한국도로공사</th> </tr> <tr> <th colspan="10">■ 공 사 명 : 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부속회선충정원공사(제용공구)</th> </tr> <tr> <th>비목</th> <th>물가변동 적용지수</th> <th>계수(%)</th> <th>가치(원)</th> <th>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th> <th>가치(원)</th> <th>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th> <th>비목군수 조정계수 (제) (1/100)</th> <th>비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인 노무비 합계</td> <td>8,474,181,282</td> <td>0.8778</td> <td>7,428,888,082</td> <td>100.00</td> <td>1,095,293</td> <td>0.7928</td> <td>0.29048778</td> <td></td> <td></td> </tr> <tr> <td>인 노임노무비(%)</td> <td>4,214,048,082</td> <td>0.8888</td> <td>3,712,640,082</td> <td>100.00</td> <td>501,408</td> <td>0.7718112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임금노무비(%)</td> <td>789,842,800</td> <td>0.9200</td> <td>725,842,800</td> <td>100.00</td> <td>63,999</td> <td>0.6818538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경비 합계</td> <td>1,842,794,118</td> <td>0.8877</td> <td>1,630,000,000</td> <td>100.00</td> <td>212,794,118</td> <td>0.77094181</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임금근로비용(%)</td> <td>1,147,898,518</td> <td>0.9222</td> <td>1,055,000,000</td> <td>100.00</td> <td>92,898,518</td> <td>0.8266905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임금근로비용(%)</td> <td>542,014,442</td> <td>0.9128</td> <td>493,000,000</td> <td>100.00</td> <td>49,014,442</td> <td>0.91542279</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기타노무비(%)</td> <td>285,714,588</td> <td>0.9128</td> <td>262,000,000</td> <td>100.00</td> <td>23,714,588</td> <td>0.84585143</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경비비 합계</td> <td>8,868,884,842</td> <td>0.9281</td> <td>8,058,884,842</td> <td>100.00</td> <td>809,999,999</td> <td>0.9107188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공임비(%)</td> <td>8,868,884,842</td> <td>0.9042</td> <td>7,999,999,999</td> <td>100.00</td> <td>868,884,842</td> <td>0.90424492</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공임비(%)</td> <td>8,488,264,808</td> <td>0.9208</td> <td>7,808,264,808</td> <td>100.00</td> <td>679,999,999</td> <td>0.8014174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직역(주도, 보조)</td> <td>88,028,408</td> <td>0.9058</td> <td>79,999,999</td> <td>100.00</td> <td>8,028,408</td> <td>0.89585843</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농림수업(%)</td> <td>2,848,822</td> <td>0.9001</td> <td>2,578,822</td> <td>100.00</td> <td>269,999</td> <td>0.90008853</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실업사외 합계</td> <td>11,888,402,888</td> <td>0.4392</td> <td>5,188,402,888</td> <td>100.00</td> <td>6,699,999,999</td> <td>0.4344898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보육후원금(%)</td> <td>11,888,402,888</td> <td>0.4392</td> <td>5,188,402,888</td> <td>100.00</td> <td>6,699,999,999</td> <td>0.4344898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건축후원금(%)</td> <td>0</td> <td>0.0000</td> <td>0.0000</td> <td>100.00</td> <td>0.0000</td> <td>0.0000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개항후원금(%)</td> <td>0</td> <td>0.0000</td> <td>0.0000</td> <td>100.00</td> <td>0.0000</td> <td>0.0000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전기후원금(%)</td> <td>0</td> <td>0.0000</td> <td>0.0000</td> <td>100.00</td> <td>0.0000</td> <td>0.0000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경비비 합계</td> <td>2,828,818,728</td> <td>0.8778</td> <td>2,488,818,728</td> <td>100.00</td> <td>339,999,999</td> <td>0.87781462</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임금노무비(%)</td> <td>888,798,408</td> <td>0.9180</td> <td>808,798,408</td> <td>100.00</td> <td>79,999,999</td> <td>0.9180148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임금노무비(%)</td> <td>487,470,884</td> <td>0.9181</td> <td>447,470,884</td> <td>100.00</td> <td>40,000,000</td> <td>0.91812482</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교육보험료(%)</td> <td>877,818,284</td> <td>0.9082</td> <td>797,818,284</td> <td>100.00</td> <td>79,999,999</td> <td>0.908249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퇴직보험료(%)</td> <td>201,800,880</td> <td>0.9074</td> <td>181,800,880</td> <td>100.00</td> <td>19,999,999</td> <td>0.907489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국민연금보험료(%)</td> <td>197,418,281</td> <td>0.9072</td> <td>177,418,281</td> <td>100.00</td> <td>20,000,000</td> <td>0.90729753</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국민연금보험료(%)</td> <td>288,198,744</td> <td>0.9108</td> <td>260,198,744</td> <td>100.00</td> <td>27,999,999</td> <td>0.910809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td> <td>11,840,764</td> <td>0.9192</td> <td>10,840,764</td> <td>100.00</td> <td>999,999</td> <td>0.91921888</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기타노무비(%)</td> <td>1,848,077,418</td> <td>0.9284</td> <td>1,668,077,418</td> <td>100.00</td> <td>179,999,999</td> <td>0.9284147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경비비 합계</td> <td>27,228,888,488</td> <td>1.0000</td> <td>27,228,888,488</td> <td>100.00</td> <td>0.0000</td> <td>1.0000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인 노무비합계</td> <td>인 노무비합계(%)</td> <td>인 노무비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8.07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수표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 | | | | | | ■ 공 사 명 : 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부속회선충정원공사(제용공구) | | | | | | | | | | 비목 | 물가변동 적용지수 | 계수(%) | 가치(원) | 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 | 가치(원) | 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 | 비목군수 조정계수 (제) (1/100) | 비목 | 비고 | 인 노무비 합계 | 8,474,181,282 | 0.8778 | 7,428,888,082 | 100.00 | 1,095,293 | 0.7928 | 0.29048778 | | | 인 노임노무비(%) | 4,214,048,082 | 0.8888 | 3,712,640,082 | 100.00 | 501,408 | 0.77181128 | | | | 인 임금노무비(%) | 789,842,800 | 0.9200 | 725,842,800 | 100.00 | 63,999 | 0.68185380 | | | | 인 경비 합계 | 1,842,794,118 | 0.8877 | 1,630,000,000 | 100.00 | 212,794,118 | 0.77094181 | | | | 인 임금근로비용(%) | 1,147,898,518 | 0.9222 | 1,055,000,000 | 100.00 | 92,898,518 | 0.82669058 | | | | 인 임금근로비용(%) | 542,014,442 | 0.9128 | 493,000,000 | 100.00 | 49,014,442 | 0.91542279 | | | | 인 기타노무비(%) | 285,714,588 | 0.9128 | 262,000,000 | 100.00 | 23,714,588 | 0.84585143 | | | | 인 경비비 합계 | 8,868,884,842 | 0.9281 | 8,058,884,842 | 100.00 | 809,999,999 | 0.91071888 | | | | 인 공임비(%) | 8,868,884,842 | 0.9042 | 7,999,999,999 | 100.00 | 868,884,842 | 0.90424492 | | | | 인 공임비(%) | 8,488,264,808 | 0.9208 | 7,808,264,808 | 100.00 | 679,999,999 | 0.80141740 | | | | 인 직역(주도, 보조) | 88,028,408 | 0.9058 | 79,999,999 | 100.00 | 8,028,408 | 0.89585843 | | | | 인 농림수업(%) | 2,848,822 | 0.9001 | 2,578,822 | 100.00 | 269,999 | 0.90008853 | | | | 인 실업사외 합계 | 11,888,402,888 | 0.4392 | 5,188,402,888 | 100.00 | 6,699,999,999 | 0.43448988 | | | | 인 보육후원금(%) | 11,888,402,888 | 0.4392 | 5,188,402,888 | 100.00 | 6,699,999,999 | 0.43448988 | | | | 인 건축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인 개항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인 전기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인 경비비 합계 | 2,828,818,728 | 0.8778 | 2,488,818,728 | 100.00 | 339,999,999 | 0.87781462 | | | | 인 임금노무비(%) | 888,798,408 | 0.9180 | 808,798,408 | 100.00 | 79,999,999 | 0.91801480 | | | | 인 임금노무비(%) | 487,470,884 | 0.9181 | 447,470,884 | 100.00 | 40,000,000 | 0.91812482 | | | | 인 교육보험료(%) | 877,818,284 | 0.9082 | 797,818,284 | 100.00 | 79,999,999 | 0.90824900 | | | | 인 퇴직보험료(%) | 201,800,880 | 0.9074 | 181,800,880 | 100.00 | 19,999,999 | 0.90748900 | | | | 인 국민연금보험료(%) | 197,418,281 | 0.9072 | 177,418,281 | 100.00 | 20,000,000 | 0.90729753 | | | | 인 국민연금보험료(%) | 288,198,744 | 0.9108 | 260,198,744 | 100.00 | 27,999,999 | 0.91080900 | | | |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840,764 | 0.9192 | 10,840,764 | 100.00 | 999,999 | 0.91921888 | | | | 인 기타노무비(%) | 1,848,077,418 | 0.9284 | 1,668,077,418 | 100.00 | 179,999,999 | 0.92841470 | | | | 인 경비비 합계 | 27,228,888,488 | 1.0000 | 27,228,888,488 | 100.00 | 0.0000 | 1.00000000 | | | | 인 노무비합계 | 인 노무비합계(%) | 인 노무비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8.07 % | | | | | | |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표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부속회선충정원공사(제용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목 | 물가변동 적용지수 | 계수(%) | 가치(원) | 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 | 가치(원) | 조정기준일 당시 (2018.09.30) | 비목군수 조정계수 (제) (1/100) | 비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노무비 합계 | 8,474,181,282 | 0.8778 | 7,428,888,082 | 100.00 | 1,095,293 | 0.7928 | 0.290487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노임노무비(%) | 4,214,048,082 | 0.8888 | 3,712,640,082 | 100.00 | 501,408 | 0.771811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임금노무비(%) | 789,842,800 | 0.9200 | 725,842,800 | 100.00 | 63,999 | 0.681853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경비 합계 | 1,842,794,118 | 0.8877 | 1,630,000,000 | 100.00 | 212,794,118 | 0.770941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임금근로비용(%) | 1,147,898,518 | 0.9222 | 1,055,000,000 | 100.00 | 92,898,518 | 0.826690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임금근로비용(%) | 542,014,442 | 0.9128 | 493,000,000 | 100.00 | 49,014,442 | 0.915422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기타노무비(%) | 285,714,588 | 0.9128 | 262,000,000 | 100.00 | 23,714,588 | 0.845851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경비비 합계 | 8,868,884,842 | 0.9281 | 8,058,884,842 | 100.00 | 809,999,999 | 0.910718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공임비(%) | 8,868,884,842 | 0.9042 | 7,999,999,999 | 100.00 | 868,884,842 | 0.904244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공임비(%) | 8,488,264,808 | 0.9208 | 7,808,264,808 | 100.00 | 679,999,999 | 0.801417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직역(주도, 보조) | 88,028,408 | 0.9058 | 79,999,999 | 100.00 | 8,028,408 | 0.895858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농림수업(%) | 2,848,822 | 0.9001 | 2,578,822 | 100.00 | 269,999 | 0.900088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실업사외 합계 | 11,888,402,888 | 0.4392 | 5,188,402,888 | 100.00 | 6,699,999,999 | 0.434489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보육후원금(%) | 11,888,402,888 | 0.4392 | 5,188,402,888 | 100.00 | 6,699,999,999 | 0.434489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건축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개항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전기후원금(%) | 0 | 0.0000 | 0.0000 | 100.00 | 0.0000 | 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경비비 합계 | 2,828,818,728 | 0.8778 | 2,488,818,728 | 100.00 | 339,999,999 | 0.877814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임금노무비(%) | 888,798,408 | 0.9180 | 808,798,408 | 100.00 | 79,999,999 | 0.918014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임금노무비(%) | 487,470,884 | 0.9181 | 447,470,884 | 100.00 | 40,000,000 | 0.918124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교육보험료(%) | 877,818,284 | 0.9082 | 797,818,284 | 100.00 | 79,999,999 | 0.90824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퇴직보험료(%) | 201,800,880 | 0.9074 | 181,800,880 | 100.00 | 19,999,999 | 0.90748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국민연금보험료(%) | 197,418,281 | 0.9072 | 177,418,281 | 100.00 | 20,000,000 | 0.907297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국민연금보험료(%) | 288,198,744 | 0.9108 | 260,198,744 | 100.00 | 27,999,999 | 0.91080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840,764 | 0.9192 | 10,840,764 | 100.00 | 999,999 | 0.919218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기타노무비(%) | 1,848,077,418 | 0.9284 | 1,668,077,418 | 100.00 | 179,999,999 | 0.928414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경비비 합계 | 27,228,888,488 | 1.0000 | 27,228,888,488 | 100.00 | 0.0000 | 1.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노무비합계 | 인 노무비합계(%) | 인 노무비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8.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단품슬라이딩)에 따른 산출 방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라 산출함

- 특정규격 자재: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ESC)과 단품증액조정요건(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정신청

㉠ 수급인의 조정신청

□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해야 함

- 조정신청일은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의미

□ 물가변동 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 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청구서를 반송함

- 물가변동 신청일은 보완하여 재접수 신청일로 인정

□ 물가변동 접수 시 일부 비목 및 항목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물가변동 신청일은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

㉔ 하수급인의 조정신청

□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금액을 요청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담당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시 조정 요구 의무

□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의무

㉕ 물가변동 조정 금액의 정산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 시 정산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4〉 물가변동에 따른 정산항목

| 구분 | 사후정산 항목 |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정산항목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환경보전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정산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공사명으로 가입된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 제출 - 사업주 및 개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계획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구분 | 사후정산 항목 |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정산항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회사에서 가입한 가입증명서, 납입 확인서, 현장직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 환경보전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상된 비용보다 적게 지출 될 경우 감액 정산되고, 그 이상 지출된 경우 증액 |
| 정산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시 정산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계 접수전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 시 실제비용으로 정산하는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 대상에서 제외 | |

3. 질의회신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회신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질의회신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주의

□ 질의회신은 “조달청-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질의·해석·해석사례 통합검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OpenList.do?key=00049>)

1) 조정 요건

(1) 기간요건

| 사례(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증액에 대한 기준일은 ‘신청일(계약상대자→발주기관)’이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인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은 ‘조정 기준일’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일’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임. |

| 사례(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중지기간 산정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재차 공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 상승이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됨 •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함 • 반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사례(3) | 입찰공고 정정으로 인한 물가변동 입찰일 적용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문 고시로 인한 입찰서 제출일 변경에 따라 물가변동 기준일 산정시 최초 입찰공고일인지? 아니면 정정 입찰일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최초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문 고시로 인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변경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입찰일은 변경된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임. |

(2) 등록요건

| 사례(4) | 물가변동 품목조정시 제외 품목 산정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품목조정시 각 품목별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등락폭 합계가 $\pm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락폭 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 산정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입찰당시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입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정된 율(등락률)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

| 사례(4) | 물가변동 품목조정시 제외 품목 산정 여부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 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산정한 등락폭의 값 전체를 더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값이 3%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당 등락폭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되는 것임 • 따라서, 각 품목별 등락폭이 ±3%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전체 등락폭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임. |

| 사례(5) | 조정기준일 이전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한 ESC 적용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조정기준일(22.1.1) 이후 22.9.1 에 ESC 2차 조정기준일이 발생하였음 - 조정기준일(22.9.1) 이전 22.6.12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분(K0)과 신규분(K1)을 적용하여 금액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수조정율이 3% 이상이 발생하였음 - 다만, K0은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이 충족되나, K1은 기간요건(81일 경과)과 등락요건(1.11%) 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경우 K1(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대한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가중평균에 의한 통합 조정률(K치)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률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함. |

| 사례(6) | 단품 ESC 및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 충족 시 적용 방법 |
|-------|--|
| 질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품 ESC과 총액 ESC이 둘 다 충족 시 단품 ESC을 먼저 신청하고 총액 신청 시 단품 ESC에 대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청가능한지? 2) 총액 ESC를 무조건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총액 ESC 신청 후 단품 ESC의 조정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지? |

| 사례(6) | 단품 ESC 및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 충족 시 적용 방법 |
|-------|---|
| 회신 | <p>1) 단품 ESC는 총액 ESC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2) 총액증액조정이 아닌 단품증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후 9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3%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면 총액증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총액 ESC를 먼저 시행한 경우라면 단품 ESC는 직전조정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이 직전조정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됨.</p> |

(3) 절차상 요건

| 사례(7)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고 있음. 이 경우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로 인정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요건(기간, 조정률)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 신청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함. |

| 사례(8) | 물가변동(ESC)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ESC 비교시점: 21.09.01, 3.27% - 2회ESC 비교시점: 22.01.01, 3.30% - 3회ESC 비교시점 : 22.09.01, 3.41% - 1차ESC 제출 날짜: 22.01.10 - 2차ESC 제출 날짜: 22.04.08 - 3차ESC 제출 날짜: 22.12.14 |

| 사례(8) | 물가변동(ESC)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이 물가변동(ESC)가 발생하여 각각 감리단에 관계서류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음 - 그러나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선금급 수정 사유, 공정보고 사유 등으로 미루었고, 그 사이에 감리단이 교체되었음 - 이후 발주처에서는 동시접수를 해 줄 수 없다며 1차ESC(21.09.01)부터 3차ESC(22.09.01)까지 합쳐져 산정된 지수율(10.39%)로 접수를 하라며 접수를 미루고 있으나, 회차당 동시접수를 하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조정을 한다면, 조정자료(예정,실행 등)가 다르므로 지수조정금액이 크게 다르게 되는 상황임 -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회차당 동시접수를 받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C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 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ESC 조정 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 사례(9) | 단품슬라이딩 또는 유사 제도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종류의 H 형강 및 철판 등이 병행되어 철골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틀 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단품슬라이딩 이외에 다른 적용 법령이 있는지, 어떠한 관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단품슬라이딩제도). 여기서 특정규격의 자재란 산출내역서 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며, 질의하신 철골자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 자재 중 입찰일 대비 15% 이상 변동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 사례(9) | 단품슬라이딩 또는 유사 제도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제한기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7절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철폐가격의 가격급등이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

2) 조정 방법

(1) 조정방법 선택과 계약서 명시

| 사례(1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을 계약 (계약서 명시) 하였으나, 공사 시행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1차 기성 청구-선금금 청구-1차, 2차 물가 변동 발생-설계변경 추가항목 발생으로 변경(감액) 예상 등으로 품목이 많아 복잡하고 난해하여, (지수)조정율로 계약 변경이 가능 한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을 산출방식(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비목 및 계약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

| 사례(11) |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도우저(무한궤도10톤)라는 장비가 19년도에는 외산장비였으나, 20년도에는 국산장비로 전환되었음 - 21년 1월에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비목구분을 하려니 기준시점(입찰시점 20년 1월)은 국산장비이나, 예정가격내역서에는 설계시점인 2019년도의 장비를 적용하여 외산장비로 되어 있음 - 예정가격 산출시 2019년 12월에 설계를 하고 2020년 1월에 입찰을 하여 계약하였는데, 21년 1월 1일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 |

| 사례(11) |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 방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19년도를 기준으로 비목구분을 하고, 또 20년도에 외산에서 국산으로 전환된 장비를 다시 외산으로 전환하여 21년 기계경비지수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더라도 기준시점(입찰일)이 20년 1월이므로 장비가 외산으로 적용되었더라도 국산으로 비목구분하고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여 기계경비지수(전부국산)를 산출해야 하는지? - 이때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방법과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에 따라 산출 시에는 비목군을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고, 제 비목을 노무비, 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A,B, …, Z”로 함. 따라서 예정가격에는 외산장비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일 당시가 품셈이 변경된 이후라면 해당 장비는 변경내용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함이 타당함 • 참고로, 표준품셈의 개정으로 ‘20년부터 국산 및 외산의 구분 없이 통합됨에 따라 입찰일 당시(기준시점)가 2020년 이후인 경우에는 기계경비 비목군을 국산(B1) 및 외산(B2) 구분없이 통합하여 기계경비(B)로 분류하면 될 것임. |

| 사례(12) |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한 단품ESC 적용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규격 자재의 단가가 시중물가이나 거래가격을 고시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견적가격에 의한 단가산출을 적용하여 단품ESC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함)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입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없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 사례(13) | 물가변동조정금액에 적용되는 공정표 및 제외공정율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2018년8월(총공기 2018.08.28~2019.08.27) - 당초예정공정표: 2018년 8월 28일 착공시 제출 - 공사1차중지: 2018.08.28~2018.10.15 농번기 공사 중지(당초 예정공정표 반영 됨) - 당초예정공정(2018.12.31.) 공정 보고율 : 9.56%(약 10%) - 공사2차중지: 2018.10.16~2019.01.31 유관기관 협의로 공사 중지(수정공정표 반영 제출) - 수정공정표 승인: 2019년 2월14일 - 수정예정공정표상 계획공정: 1.24%(실제공사는 1.24% 이하) - 물가변동조정대상기준일: 2019.01.02 - 물가변동조정 신청: 2019년 3월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후 농번기 공사 중지와 발주처의 도로공사 인허가 사항으로 2월까지 당초예정 공정표대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감독관의 요청으로 실제 공정은 없으나 인력대기 등이 진행되므로 순공사 증가는 없지만 간접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상하여 당초예정공정표에 해당되는 공정율로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공정율을 9.56%로 보고하였음. - 이후 인허가 사항이 2월에 승인되어 수정공정표를 제출 승인(2019.02.14)후 물가변동조정을 신청하였고, 변경된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제외공정율을 1.24%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당초예정공정표 공정율을 기준으로 제외공정율(9.56%)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 이 경우 제외공정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실제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공사중지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제외공정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사례(14) | 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최초계약: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총공사금액: 8,848백만원 - 2022년 09월 계약변경: 2022년 10월 변경공정표 제출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4년01월: 총공사금액: 12,263백만원(증액 3,415백만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2년01월01일, 2022년04월30일 - 금번 물가변동은 2022년 01월01일, 2022년 04월30일에 이루졌으나, 물가기준일 이전부터 공사지연(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아님)으로 2022년 10월 제1회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증액 3,415백만원) 및 공사기간연장(1년)과 수정예정공정표가 제출 되었음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 2022년 01월01일 당시 당초 예정공정표상(8,848백만원, 23년1월준공) 공정율은 약25%이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예정공정표상(12,263백만원, 24년1월준공)의 공정율은 약10%로 수정되었음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01월01일, 2022년04월30일 물가변동 적용시 당초 예정공정표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것을 적용했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 사례(15) |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단가 시 선금 공제 |
|--------|--|
| 질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이윤 또는 관리비의 산정 방법? 2) 물가변동금액은 품목조정률×물가변동적용대가로 산출한 후 선금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선금을 공제한 최종 물가변동 금액을 다시 분개하여 변경단가로 적용하는지? |
| 회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계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등락폭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금액으로 산정함. |

| | |
|---------------|---|
| 사례(15) |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단가 시 선금 공제 |
| | 2)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에 의함.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
|---------------|--|
| 사례(1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해야 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 | |
|---------------|---|
| 사례(17) | 물가변동 기성대가의 공제관련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기준일 당시 내역서에 없는 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로 발생된 비목에 대하여 발주처에 물가변동 서류 접수전 수령한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의 적용 대상이 안 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변동 조정대가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정대가 내용 중에서 기성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신규비목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변동조정대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닐것으로 판단됨. |

| 사례(18) |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변경 비목에 대해서는 지수변동률 산출 시 기준시점이 "설계변경계약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서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이 ①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적용되는 것인지 ②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처리 완료 통보(공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③설계변경 전 작성한 회의록 등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당초 계약 분 물가등락률(K0)과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의 물가등락률(K1)을 각각 따로 산출한 후, 당초 계약 분과 설계변경 분의 물가등락률 가중평균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충족률 3%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등락률(K1) 산정 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고, 비교시점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할 때"를 말하는 것"임. |

| 사례(19) |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이 삭제된 경우 산출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변동 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을 실시 하였으나 현장사정(시공사 사유)으로 시공이 중지 된 후 다시 착공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종이 대부분 삭제되었음 • (질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신규단가를 적용)에 따라 기존공종이 대부분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다시 산출 하는 것이 적정한지? 2) 기 물가변동 후 물가 변동 조건 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을 사유로 물가변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3) 공사 중지 사유가 시공사 잘못된 경우 공사 중지 기간중 물가상승율을 제외 할수 있는지? |

| 사례(19) |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이 삭제된 경우 산출 방법 |
|--------|--|
| 회신 | <p>1)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든 설계변경이든 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임</p> <p>2) 물가변동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이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합니다)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여 증감되는 수량을 반영하는 것이며, 신규단가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가는 이전 물가변동과는 관계없음. 즉,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졌다하여 이전 물가변동을 변경된 계약단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아님</p> <p>3) 공사 중지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는 명시 규정은 없으나, 공정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됨.</p> |

| 사례(20) | 품목조정률에 따른 등락폭 반영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함.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예를 들어 입찰 당시 적용한 가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였다면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에 적용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 사례(20) | 품목조정률에 따른 등락폭 반영 기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입찰 당시 가격(또는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 대하여 조사 산정한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임. |

| 사례(21) | 비목군 분류대가 중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조정률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비목군 분류대가 검토시, 입찰 및 계약시점에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된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 분류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되지 않은 100억 미만의 공사라도 일부공종중 1식으로 처리되어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단가 중 하나의 견적에 2가지 이상의 비목이 혼합된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비목군분류가 가능한 것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조정을 산출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 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함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지수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하는 제비목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에 의한 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류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으로는 구체적인 비목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1식단가의 경우 등)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자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공종에 대하여 세부내역 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1식단가)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표준시장단가(G1 : 토목부분, G2 : 건축부분, G3 : 기계설비부분, G4 : 전기부분, G5 : 정보통신부분) 비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이러한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부대공사 등)의 경우에는 주공사의 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표준시장단가가 아니거나 비목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사례(22)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일 2022. 2월, 계약일 2022. 3월, 현시점 2022. 12월 - 생산자물가지수 10월까지 확정 발표 상태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생산자물가지수의 해당품목지수일 경우 생산자물가지수의 발표시점이 실제와 2개월 차이가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의 2개월 전인 확정지수를 적용하여도 가능한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하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함. 따라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입찰시점(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비교시점)의 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물가지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 당시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사례(23) | 물가변동 중 지수조정률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준일이 2019년 8월 10일, 지수는 전월지수인 7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7월 확정지수는 9월 20일경 전후로 발표가 되는 상황임. 이때 확정지수가 발표되기 전인 2019년 8월 20일경 7월 잠정지수를 활용하여 계약금액 증액요청을 하였을 시, 확정지수가 발표된 후 재요청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률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며, 이때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함 |

| 사례(24) | 단품슬라이딩의 재료비 등락률 적용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 공종에서 설계내역서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에 있어 당해 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산정은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기초자료인 일위대가와 견적서의 단가가 상이한 경우 품목조정률의 물가변동 산출시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

| 사례(24) | 단품슬라이딩의 재료비 등락률 적용기준 |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단품슬라이딩에 따라 물가변동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 따라서, 만약 계약체결당시 견적이나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견적이나 동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 바, 당초 설계시 부득이하게 견적가격으로 적용하였다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일하게 각각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사례(25) | 단품슬라이딩 대상이 되는 자재비율은 순공사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은 직접공사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공사 원가(직접공사비+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경비 등)를 말하는 것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함 • 이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이란 직접공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제외한 순공사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3) 조정신청

| 사례(26) | 준공기한 이후 물가변동 적용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사기간: 2017.07.26.~2020.10.24. - 1차 공사기간: 2017.07.26.~2019.09.23(현재 지연배상금 적용대상현장)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2018.09.01과 2019.09.01일자로 발생하여 1차 공사 금액중 미시공 및 미청구된 잔여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였으나, 관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적용대상공사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임.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기한이 초과하여 지연배상금이 적용대상 현장이나 준공금을 청구 및 수령하지 않았기에 1차분 잔여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함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준공하고 준공대가를 수령 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준공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대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사례(27) | 하도급업체의 단품슬라이딩의 적용 가능성 및 기준 |
|--------|--|
| 질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일 자재 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떤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원도급사가 ESC를 적용받을수 없는 경우라도 하도급업체가 단품슬라이딩을 통하여 ESC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
| 회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자재에 대한 가격조사가 견적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견적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2) 단품증액조정이란 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나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 사례(28) | ESC에 있어 하도급업체 반영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일: 2017.06.15., 계약일: 2017.06.23. - 1차 ESC: 2018.01.01.(K1=5.08%), 2차 ESC: 2018.09.01.(K2=3.99%), 3차 ESC: 2019.09.01.(K3=4.23%) - 신기술공법 업체는 하수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예정자 선정 및 신기술 사용협약까지 체결된(2017.08.28) 상태이나 공정상 현재까지 하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신기술공법 업체에 ESC를 반영해야 되는지? 신기술공법 업체에 ESC를 반영해야 된다면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신기술공법 업체에 ESC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의 변경이 타당한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도급계약 이전에 원도급사가 증액받은 물가변동 분을 하도급금액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협약 시점의 차이로 물가가 상승하여 실제 시공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원도급사와 시공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하도급체결 계약금액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등은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 사례(29) | 사후정산항목 요율 변경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정산항목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시 변경된 요율로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계약시 적용한 보험료 요율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

| | |
|--------|---|
| 사례(29) | 사후정산항목 요율 변경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기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실제 납입보험료를 확인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보험료율은 최초계약시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
|--------|---|
| 사례(3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7차 발생하여 승인 반영하였음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항목으로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란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물가변동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은 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III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1. 개요
- 2. 활용 방법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1. 개요

□ “하도급법”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법 제16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등)

〈표 3-1〉 하도급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현황

| 구분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
|--------|--|---|--|
| 법적근거 | 법 제16조 | 법 제16조의2 | 법 제2조 및 제3조 등 |
| 절차 | 하도급계약→원가상승→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증감→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15일 이내) 및 비율에 따른 증감(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원가상승→신청→협의 및 수용 | 하도급계약 및 연동계약→원가상승→단가 인상 |
| 요건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증감 | 원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 신청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신청 대행 가능) | 없음(연동조건 충족 시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등 | 시정조치, 과징금 등 | 시정조치, 과태료 등 |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도 병행 적용 |

2. 활용 방법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법 제16조)

(1) 조정요건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 계약금액 증액+추가비용 증가
 - * '경제상황의 변동'은 '설계변경'이나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해석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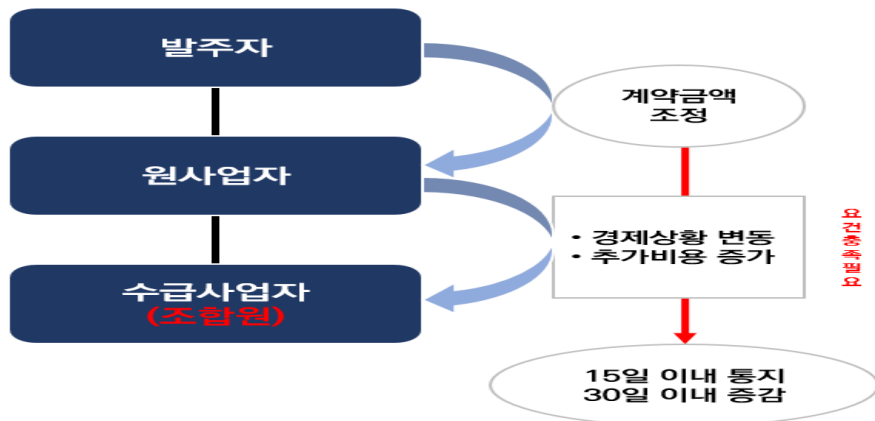
- 감액은 증액과 달리 재량행위이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을 준수할 필요

(2) 조정방법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

-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이 지나기 전까지를 의미(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
-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비율·금액, 기준시점, 적용 공사 분야 등과 그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제반 사항(관련 공사, 적용시점, 적용 하도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할 의무
 -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별도로 통지 의무(×)

-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만약,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더라도 그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 발주자가 추가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의무
 - * 지연이율: 연 15.5%, 어음 할인율: 연 7.5%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 수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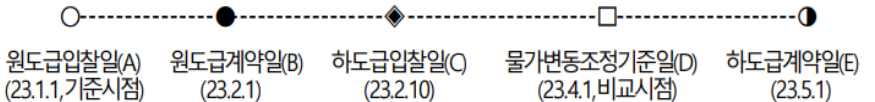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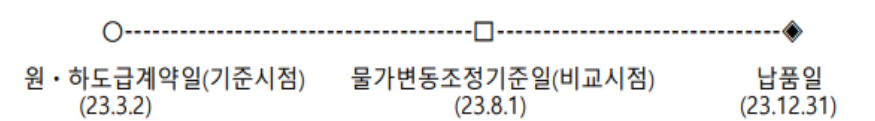
[그림 3-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도식

(3) 질의회신

| 사례(1) | 약정 또는 타 법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 거부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경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와의 약정보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 못함 이러한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과는 목적 및 적용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즉,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

| 사례(2)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와 같은 경우 최종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은? <p>원도급계약일(A) (22.10.1, 기준시점) 하도급계약일(B) (23.1.1) 물가변동조정기준일(C) (23.4.1, 비교시점) 납품일 (23.12.31)</p> <p><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율 : 6%(A-C구간) 비교시점 이후 하도급 잔여공사분(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 : 5억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6%(조정율) = 3천만원 다만, 원도급계약일과 하도급계약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A-B구간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도급계약일부터 하도급계약시점(A-B구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공제가 가능함 즉, 원칙적으로는 A-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나, 원사업자가 B-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음. |

| 사례(3)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산점 |
|-----------|--|
| <p>질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되는지?  <p>원도급입찰일(A) (23.1.1, 기준시점) 원도급계약일(B) (23.2.1) 하도급입찰일(C) (23.2.10) 물가변동조정기준일(D) (23.4.1, 비교시점) 하도급계약일(E) (23.5.1)</p> |
| <p>회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물가변동을 산출기간은 하도급위탁 후 즉, 하도급계약일부터 조정기준일(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으로는 '조정 기준시점'임)까지임 따라서 위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계약 이전 선시공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원도급계약일(B)에 선시공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물가변동을 산출기간은 B-D구간이 됨. |

| 사례(4)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 산정 |
|-----------|--|
| <p>질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와 같은 경우 최종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은 얼마가 타당한지?  <p>원·하도급계약일(기준시점) (23.3.2) 물가변동조정기준일(비교시점) (23.8.1) 납품일 (23.12.31)</p> <p><조건> ① 하도급계약금액 10억, ②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기성금액 5억 ③ 선급금 지급일 및 금액 : 23.3.10. 2억(20%), ④ 물가변동조정율 : 20%</p> |
| <p>회신</p> | <p>①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 : 1억원 - 5억(계약금액-조정기준일까지의 기성금액)×20%(조정율)</p> <p>② 선급금 공제금액 : 2천만원 - 5억(조정대상금액)×20%(조정율)×20%(선급율)</p> <p>③ 최종 하도급 추가 조정금액(①-②) : 8천만원</p> |

| 사례(5)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낙찰률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4조의 낙찰률은 하도급 낙찰률인지, 도급 낙찰률인지, 원·하도급 복합 낙찰률(도급 낙찰률×하도급 낙찰률)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별도로 정의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낙찰률은 하도급계약의 낙찰률을 의미함. |

| 사례(6) |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의 조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품목의 하도급단가가 같은 품목의 도급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증액방식, 해당 공종 또는 품목 등)과 비율(증액시 적용된 비율)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며,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단가)이 원도급금액(단가)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단가)을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하도급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하도급금액이 증액된 도급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해당 품목(또는 공종)의 하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그 차액(도급-하도급)이 너무 크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지 말아야 함 |

| 사례(7) |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의 조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품목의 하도급 단가가 같은 품목의 도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하도급법 제 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증액방식, 해당 공종 또는 품목 등)과 비율(증액시 적용된 비율)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며,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단가)이 원도급금액(단가)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단가)을 기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하도급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하도급금액이 증액된 도급금액을 현저히 하회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 |
|-------|---|
| 사례(7) |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의 조정 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예외적으로 그 차액(도급-하도급)이 너무 크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즉 시장가격(물가정보지 또는 수급사업자의 구매가능한 가격 등), 증액된 도급 및 하도급 금액의 차이 정도, 수급사업자의 손실 발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초 조정금액 보다 증액할 수 있음. |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1) 조정요건

- 수급사업자는 건설위탁을 받은 후(계약 체결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ex: 자연재해, 정부 정책의 변경 등)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정
- 이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구두 의사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2) 조정방법

□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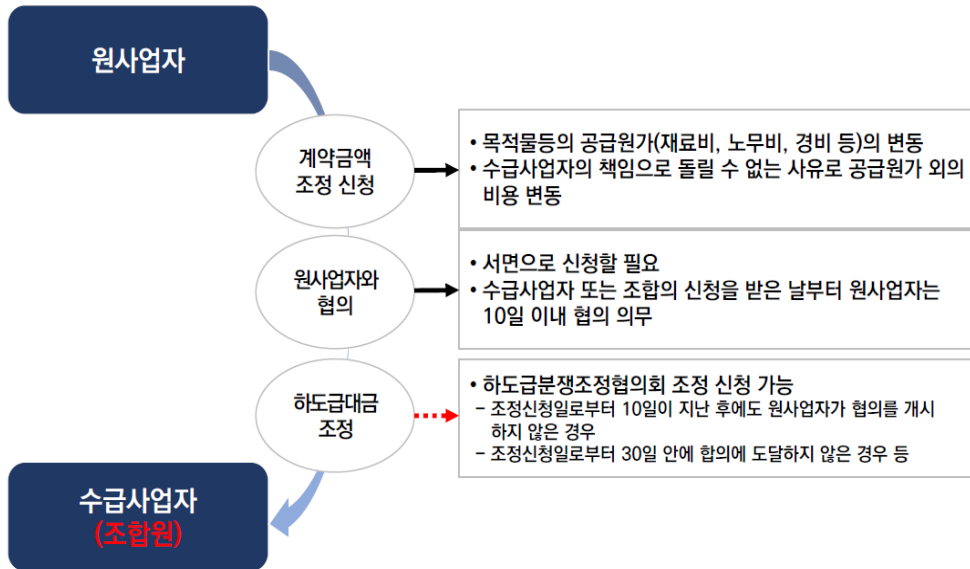
- 다만,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의무(하도급법 제16조의2 제3항)
- 또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 신청한 것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중복신청 불가)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에 사정변경(비용변동 및 추가 입증 자료 제출 등)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 합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협의를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된 경우도 포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아니됨(하도급법 제16조의2제7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청여부 또는 신청일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확정 필요
 - * 다만, 서류미비로 원사업자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신청한 날로 간주
-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장소·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에 협이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
- 원사업자는 협의개시 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회피하면 아니되나,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과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협이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림 3-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도식

(3) 질의회신

| 사례(1) |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하는지의 판단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단순 협의만 해도 충분한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적을 조정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

| 사례(2) |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발생시 조정 협의 의무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경제상황 변동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도록 안내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함 이 경우에도 공급원가 등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건에 따라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수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협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

| 사례(3) |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 조정 의무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의 경우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가 조정이 가능한지? |

| 사례(3) |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 조정 의무 |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1.가.(2).(다)항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사업자로부터 사양서 등이 포함된 건설자재를 주문받아 납품하였다면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 사양서 등이 없는 규격·표준화된 자재나 단순한 건설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등) 납품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위 기준에 따라 만약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3)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1) 조정요건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하도급대금 연동표 포함)를 작성하고, 대상 원재료의 가격 변동률을 확인하여 조정요건 충족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 및 제5조 등)

• 2023. 10. 04. 시행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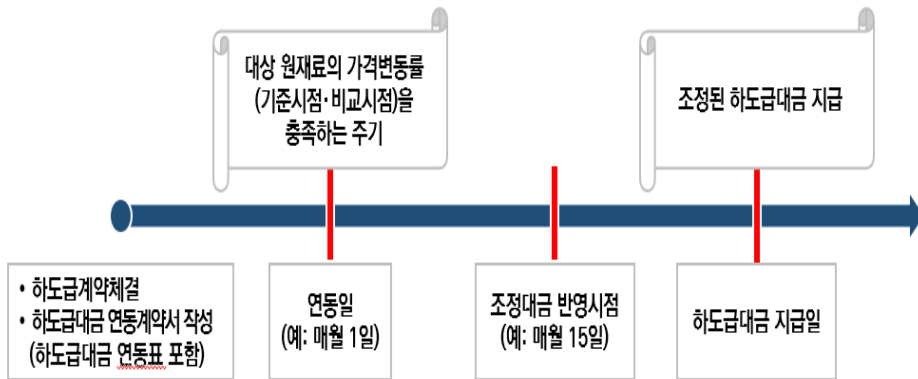
〈표 3-2〉 주요 원재료의 유형 및 예시

| 주요 원재료 유형 | 예시 |
|---|---------------------------------|
| 천연재료 | 알루미늄, 아연, 주석, 니켈, 원유, 원목 등 |
| 화합물 |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 철강재,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첨부1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 포함)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 최초 체결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계약 체결시 작성
 - 목적물 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연동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함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
 - 만약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첨부2」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그림 3-3]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의 도식

(2) 조정방법

① 목적물 등의 명칭 및 대상 원재료

- 목적물 등의 명칭은 목적물,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함
- 대상 원재료는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로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

□ 다만, 건설 하도급공사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상사급자재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대상 가능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1호)에서 규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 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인센티브

- 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
-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1. 목적물 등의 명칭, 2. 대상 원재료’를 다음과 같이 기재함

- 목적물 등의 명칭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료 등

*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하고,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

- 대상 원재료는 제조업의 경우 원료를 의미하나, 건설업에서는 목적물 등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

| 구분 | 기재사항 |
|--------------|----------|
| 1. 목적물 등의 명칭 | 예시) 일반철근 |
| 2. 대상 원재료 | 예시) 일반철근 |

②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

The screenshot shows the '원자재가격정보' (Commodity Price Information) page on the Industrial Trade Promotion Agency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정책정보' (Policy Information), '업무계획' (Business Plan), '정책계시판' (Policy Notice Board), '분야별 주요 정책' (Main Policies by Field), and '통계정보' (Statistics Information). The '통계정보' section is expanded to show '원자재가격정보' (Commodity Price Information). The '철강' (Steel) category is selected, and the '현재시각 2023년 11월 20일 현재' (Current Date: 2023.11.20) is displayed. A table lists commodity prices for various steel products, including '고철 생산' (High-quality steel production), '열연코일 3.0x48mm' (Hot-rolled coil 3.0x48mm), '저철용 원료탄 Hard' (Low-iron raw material Hard), and '철강석 62% FE' (Iron ore 62% FE). The table includes columns for '품목' (Commodity), '거래소' (Market), '인도용' (Destination), '단위' (Unit), '가격' (Price), '등락폭' (Change Rate), '등락률' (Change Rate %), and '주기' (Period). The prices are as follows: 고철 생산 (KRW/ton, 460,000.00), 열연코일 3.0x48mm (KRW/ton, 893,200.00), 저철용 원료탄 Hard (USD/ton, 310.00), and 철강석 62% FE (USD/dt, 131.90). The change rates are: 고철 생산 (-), 열연코일 3.0x48mm (-1.11%), 저철용 원료탄 Hard (-5.13%), and 철강석 62% FE (+1.66%).

[그림 3-4]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주요 물가정보 변동 품목

【공통】

| 품명 | 단위 | 가격 | 변동 |
|---------------|-----|---------|----------|
| 전기동 | kg | 10,700 | ↓ 100 |
| 보통철근(일반철근) | M/T | 835,000 | ▲ 60,000 |
| 돌대 | kg | 13,640 | ▲ 860 |
| 알루미늄판(A 1050) | kg | 4,830 | ▲ 210 |
| 의송 | 재 | 1,470 | - |

【토목】

| 품명 | 단위 | 가격 | 변동 |
|-----------|-----|---------|----|
| 유공관고정테이프 | 5m | 5,300 | - |
| 탄성충격흡수볼라드 | 개 | 300,000 | - |
| 중하중OK그레이팅 | 개 | 179,600 | - |
| SAP옹벽 | 개 | 711,750 | - |
| 컷백아스팔트 | D/M | 260,000 | - |

【건축】

| 품명 | 단위 | 가격 | 변동 |
|----------------|----------------|-----------|----|
| 실리칼시스템-A:RSS-L | m ² | 97,415 | - |
| 큰크리트벽돌 | 개 | 80 | - |
| 도예벽화 | m ² | 2,200,000 | - |
| 금속천장TL630-2 | m ² | 90,750 | - |
| 황도미장재(내집이니까) | 포 | 18,000 | - |

[그림 3-5]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의 원자재 가격정보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분 | 기재사항 |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KRW/ton |

③ 연동요건

□ 연동요건은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을 말함

- 연동요건은 하도급대금을 연동해야하는 원재료 가격변동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연동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준으로 연동할지는 '연동산식'으로 결정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함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4. 연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4. 연동요건 | 예시) 3% 이상 상승 |

④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을 말함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약정) 체결일이 '23년 11월 15일, 연동일을 1개월 후 매월 1일로 작성하였다면 기준시점은 '23년 10월, 비교시점은 '23년 12월

□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함

- 예를 들어, 보통철근(일반철근)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850,000원/t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950,000원/t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frac{950,000\text{원}/t - 850,000\text{원}/t}{850,000\text{원}/t} \times 100 = 11.8\%$$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p>예시) 하도급계약(약정) 체결일 '23년 11월 15일, 연동일을 1개월 후 매월 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점: 하도급계약(약정) 체결일의 전월(2023년 10월) •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2023년 12월) |

⑤ 연동주기

- 연동주기는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함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합의 가능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 마다'와 같이 정할 수 있음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함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6. 연동주기'를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6. 연동주기 | <p>예시) 1개월</p> <p>예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p> <p>예시) 철근: 분기, 시멘트: 1개월</p> |

⑥ 연동일

- 연동일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함
 - 연동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연동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기재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한 날’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함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7. 연동일’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7. 연동일 | 예시) 매월 1일 예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예시) 철근: 매 분기 초일, 시멘트: 1일 |

⑦ 반영시점

- 반영시점은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말함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함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8. 반영시점’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8. 반영시점 | 예시) 매월 1일 예시)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시) 철근: 매 분기 초일, 시멘트: 매월 1일 |

⑧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산식을 말함
-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은 특정한 기준이 없으며,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
-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표(별첨)의 '8. 반영시점'을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9.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 예시) 하도급단가=비교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기준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단위(t)×반영비율(100%) |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첨부1-예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기재사항 |
|-------------------------|--|
| 1. 목적물등의 명칭 | 일반철근 |
| 2. 대상 원재료 | 일반철근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KRW/ton |
| 4. 연동요건 | 3% 이상 상승 |
|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하도급계약(약정) 체결일 '23년 11월 15일, 연동일을 1개월 후 매월 1일 기준시점: 하도급계약(약정) 체결일의 전월(2023년 10월)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2023년 12월) |
| 6. 연동주기 | 1개월 |
| 7. 연동일 | 매월 1일 |
| 8. 반영시점 | 매월 1일 |
|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비교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기준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단위(t)×반영비율(100%) |
| 10. 기타사항 | - |

납품단가 변동표(첨부2-예시)

- ◇ 대상 하도급계약: (명칭) 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체결 일자) 2023년 11월 15일
-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비교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기준시점의 보통 철근의 기준가격)×단위(t)×반영비율(100%)
-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850,000원/t

| 반영시점 | 원재료 기준가격 | | 조정된 납품단가 | | 원사업자 확인 | 수급사업자 확인 |
|-----------|------------|--------------|------------|-------------|---------|----------|
| | 기준시점 | 비교시점 | 조정전 금액 | 조정후 금액 | | |
| 24.01.01. | 850,000원/t | 950,000원/t | 8,500,000원 | 9,500,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24.03.01. | 900,000원/t | 1,000,000원/t | 9,000,000원 | 10,000,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 | | |
| | | | | | | |

(3) 기타 사항

① 적용의 배제

□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법 제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미연동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원·수급사업자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

□ 미연동 합의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법 제16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② 다른 조정제도와의 관계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법 제16조)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을 배제하지 않음

□ 따라서 법 제16조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또한 원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됨

〈표 3-3〉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의 비교

| 구분 | 연동제 | 조정협의제도 |
|---------------|---------------------------|--|
| 대상 | 주요 원재료의 비용 |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 사전 (계약체결 시) |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
| 강제성 | 의무 |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
| 제재 |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1천만원) |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

㉔ 의무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할 수 있음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될 수 있음
- 탈법행위를 통해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연동계약서 작성 의무

(4) 질의 회신

① 대상 원재료

| 사례(1) | 건설하도급 공사에서의 원재료 비중의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 대금에서의 비중인지, 자재비 혹은 재료비 대금에 대한 비중 기준인 것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위탁에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위탁한 공사의 대금(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사례(2) | 페인트의 원재료 해당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인트 도장공사를 건설위탁 또는 수리위탁 한 경우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 |

| 사례(3) | 시멘트 또는 레미콘의 원재료 해당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는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 한편, 수급사업자가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이 원재료가 되며 레미콘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함 |

| 사례(4) | 간접비 또는 인건비의 원재료 대상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가 하도급대금 연동 총족 경우 양사간 협의하여 재료비 5% 상승분을 위탁업체 추가 지급 시, ①재료비 추가상승분(7,994,960*5%)만 지급하는지? ②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는지? |

| 사례(4) | 간접비 또는 인건비의 원재료 대상 여부 | | | | |
|-------|--|-----------|------------|-----------------------------|--|
| 순공사원가 | 설치공사비 | 재료비 | 7,994,960 | | |
| | | 노무비 | 6,498,000 | | |
| | | 경비 | 1,850,000 | | |
| | | 소계 | 16,342,960 | | |
| | 간접비 | 고용보험료 | 65,630 | 1.01% * 노무비(원재료+설치공사) | 모든공사 적용 |
| | | 산재보험료 | 240,426 | 3.70% * 노무비(원재료+설치공사) | 모든공사 적용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47,832 | 3.09% * (재료비+노무비), 설치공사 | 모든공사 적용(사후정산) 건설공사(총)경우 - 3만원 3.09% |
| | | 국민연금보험 | 해당없음 | 4.50% * 노무비(설치공사) | 현장 설치(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
| | | 국민건강보험 | 해당없음 | 3.545% * 노무비(설치공사) | 현장 설치(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해당없음 | 12.81% * 국민건강보험 | 현장 설치(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
| | | 퇴직공제부금 | 해당없음 | 2.30% * 노무비(설치공사) | 50만원이상 공사 적용 |
| | | 기타경비 | 144,930 | 1.00% * (재료비+노무비), 원재료+설치공사 | 모든공사 적용 (원재료+설치공사) |
| | | 소계 | 898,818 | |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역시 하도급 대금 연동의 적용(x)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 | | |

| 사례(5) | 가설 자재의 원재료 대상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이 아닌 가설 자재의 경우(예, 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 연동대상 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나 거푸집은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재료”란 사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 즉 물건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처럼 물품등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사용될 뿐인 것들인 비계나 거푸집 등은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사례(6) |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은 같으나 규격이 다른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은?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AL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 사례(6) |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 |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원재료 또는 별개의 물품등으로 해석되는바, 주택 공사를 위탁하고 그 원재료로 AL창호와 AL패널이 들어가는 경우, AL창호와 AL패널 각각의 비용이 주택 공사에 따른 대금 중 10%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창호와 AL패널이 원재료이므로 AL창호와 AL패널의 원재료인 AL의 비중을 고려(×) |

| 사례(7) | 다수 공사에서의 원재료 판단 기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 다만,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②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사례(8)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 가능한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사례(9) |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의 기준지표 설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

| 사례(10)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기준지표 설정 방법 |
|--------|--|
| 질의 | •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
| 회신 | •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③ 연동요건

| 사례(11) |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연동요건 |
|--------|---|
| 질의 | • 연동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 회신 | • 연동요건은 원·수급사업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 사례(12) | 원재료별 연동 요건 |
|--------|---|
| 질의 | •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다른 계약마다 연동요건을 다르게해도 되는지? |
| 회신 | • 연동제는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건별로 연동요건 등을 다르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

④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사례(13) |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 |
|--------|---|
| 질의 | •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
| 회신 |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으로서 원재료 가격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음 •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함 |

⑤ 연동주기 및 연동일

| 사례(14) | 연동주기의 설정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주기는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장래의 리스크에 대한 분담 약정을 사전에 정한다는 연동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음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기 어려워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음 |

| 사례(15) | 연동주기 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 조정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주기를 월간으로 하여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설정하였다면 조정일의 전월 중간 (ex: 전월 15일)에 조정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에 대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판단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반영해주면 됨 다만, 구체적인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시점, 연동 산식 등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⑥ 반영시점

| 사례(16) | 반영시점의 설정 기간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 '조정대금 반영일'은 법정지체 사항으로서 연동약정 체결시 합의하여 적어야 함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또한 하도급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① 선금금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② 하도급대금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③ 발주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 사례(17) | 반영시점의 특약 설정 가능 여부 |
|--------|---|
| 질의 | •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번에 소급해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
| 회신 | •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선급금, 하도급대금, 잔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준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⑦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사례(18) | 하도급대금 연동 단식 상·하한 설정 가능 여부 |
|--------|---|
| 질의 | • 조정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 회신 | •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연동 계약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⑧ 기타 사항

| 사례(19) |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미체결 가능 여부 |
|--------|---|
| 질의 |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차지 비율, 조정 주기, 기준 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
| 회신 | •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음 • 미연동 조건 또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연동조건에 동의하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음 |

| 사례(20) | 입찰 시 투찰금액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가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음 |

| 사례(21) | 입찰공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미체결 조건 설정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의 성신탁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성신탁의 의무 위반이나 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 사례(22) | 입찰공고시 기한 내 미제출 시 연동제 미시행으로 간주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시 참여사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공지문 예시]</p> <p>당사는 '23. 10. 4. 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기 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p> </div>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음 |

| 사례(23) | 공사기간 또는 금액 변경으로 인한 연동제 적용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계약되었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으로 90일보다 길어지고 대금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중간 타절로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동적용대상 여부 검토 후,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 공사가 타절 된 경우라도 최초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 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 사례(24) | 연동제 미합의 후 연동제 체결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절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제 미연동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체결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은 가능함 |

| 사례(25) |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시 수급사업자별 연동제 적용 방법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계약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컨소시엄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 의무를 다해야 함 다만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사례(26) | 현장설명회 원사업자의 연동조건 등에 따른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설명회 시 원사업자가 연동조건, 산식등을 제시하고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예정)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음 |

| 사례(27) | 약정 이후 조정 금액 인하 협의 가능 여부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됨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하에 연동계약 변경체결 등은 가능할 수 있음 |

| 사례(28) |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지방계약법에 계약금액 조정제도와와의 관계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지방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짐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 사례(29)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증액 항목 |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대금증액 의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동특약에 따른 금액인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됨 |

| | |
|---------------|--|
| 사례(29)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증액 항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대금지급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함 |

| | |
|---------------|---|
| 사례(30)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른 인센티브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하도급 별점을 경감(3점)함 |

| | |
|---------------|--|
| 사례(31) |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대응 방안 |
| 질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
|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의 경우 3천만원, 2차 위반의 경우 4천만원, 3차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 부과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IV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방안

- 1. 개요
- 2. 활용 방법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방안

1. 개요

□ 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등 당사자가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되, 어떠한 고유한 분쟁결정권을 갖지 않는 해결방법을 말함

-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대부분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

| | | 구분 | 소송 | 중재 | 조정 |
|--|-----------------------|------|-----|-----|-----|
| 조정 (Mediation) •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조정인)에 맡겨 그 판단에 따라 분쟁 해결 ※ 법적 강제성이 없음(조정 결과 불수락 가능) | 당사자 중심 ↓ 제3자 중심 | 구속력 | ○ | ○ | x |
| | |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 기간 | 장기간 | 단기간 | 단기간 |
| 중재 (Arbitration) •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 해결 ※ 법적 강제성이 있음(중재 결과 구속력 발생) | | 비용 | 고비용 | 저비용 | 저비용 |
| 소송 (Litigation) • 재판에 의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 | | | |

[그림 4-1] 조정·중재·소송의 비교

□ 조정은 조정기관의 주체에 따라 민사법상 조정, 임의적 조정, 행정형 조정으로 구분되는데, 건설클레임 관련 분쟁 조정은 행정형 조정에 해당함

- 행정형 조정은 각 주무부처 소관의 개별 법률에서 각각 조정의 심사·조정 대상, 조정위원의 설치 및 구성, 절차, 효력 등 규정

| 기관 | 근거 | 대상 | 효력 | 특징 |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계약법 제29조 | • 계약당사자간 분쟁 | 재판상 화해 | - |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5조 | • 국제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再審) • 계약당사자간 분쟁조정 | 재판상 화해 | - |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 | 재판상 화해 | • 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됨 |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법 제24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의 분쟁 | 재판상 화해 | • 건설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건설/전문건설협회 등사업자단체에서 파견된 위원으로 구성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 | 재판상 화해 | •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대해 민사조정법을 준용함 |

[그림 4-2] 개별 법률상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공동설치)에 해당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조정기구로 구분

2. 활용 방법

-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실적은 2020년 195건, 2021년 136건, 2022년 126건으로 평균 152건, 조정성립 비율은 약 56%를 차지함



[그림 4-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http://www.csdmc.or.kr/>)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함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 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표 4-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각하 또는 조정 사유

| 각하 사유 | 조정 종료 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의리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그림 4-4]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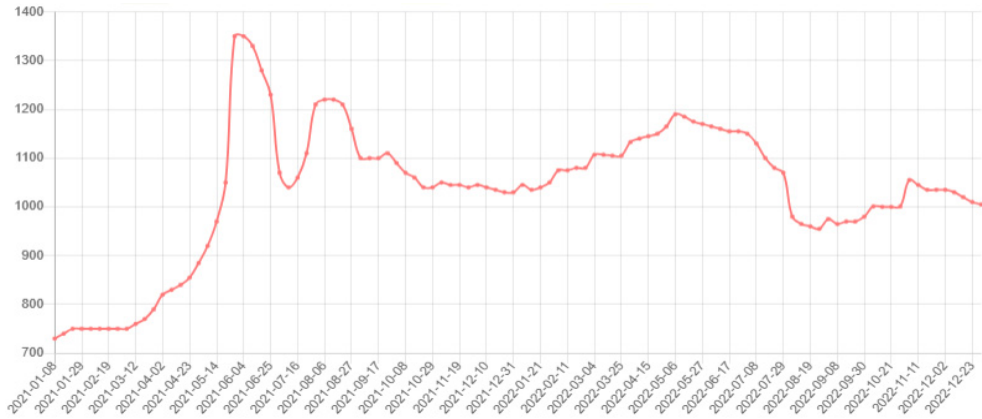
V

시사점

1. 단품 슬라이딩의 기준 개선 필요
2. 건설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필요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대상 확대

1. 단품 슬라이딩의 기준 개선 필요

- 지방계약법에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조정(단품슬라이딩)을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73조 제6항)
- 단품슬라이딩은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공사계약의 특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
- 그러나 현재 공사계약에 있어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용도가 낮은 단품슬라이딩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3. 5. 4.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3. 8. 17.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였음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 → 0.5%
- 그럼에도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의 증감 요건을 충족하는 자재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철근 기준 가격이 약 40% 이상 급등(75만원→130만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



[그림 5-1] 철근가격 추이(2021년 1월~12월)

- 또한,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ESC)과 단품증액조정요건(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비록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등에는 단품 슬라이딩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수급인(원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을 고려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단품슬라이딩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현행 15% 이상의 증감 요건을 10%로 완화하고, 총액증액조정요건(ESC)과 단품증액조정요건(단품슬라이딩) 가운데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설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필요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현재 건설 하도급공사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매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1호)에서 규정 적극 활용 필요
-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원재료를 설정하고 그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연동제 적용을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하도급대금 조정 등 활용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제도의 내용, 원재료 선정 및 활용 방안 등 설명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9. 20.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을 말함
 - 현재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

- 따라서 건설하도급 분야의 독립적·전문적인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대상 확대

- 현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각하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 각하 사유 | 조정 종료 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u>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 이에 따라 피해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이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그러나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이후 조정을 신청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5-2〉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평균 처리기간 추이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1~7월 |
|-----------|------|------|------|------|-----------|
| 전체 사건 | 159일 | 219일 | 172일 | 220일 | 162일 |
| 위원회 의결 사건 | 427일 | 497일 | 575일 | 597일 | 533일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조사”, “공정위 문어발 조사에... 기업 한숨 커진다” 기사 관련 해명자료, 2023. 09. 11.

-
- 참고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4조의5), 분쟁조정을 통한 조정조서 작성 및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4조의6 제4항)

 - 따라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활성화 및 수급사업자의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병행하여 실시하며, 상호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http://www.csd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2023. 10. 4.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2. 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 박선구,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
- 박영근, “계약금액 조정”, 조달교육원 교육자료, 2020.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
- 스틸데일리 DB센터(<https://www.steeldaily.co.kr/>)
- 서울특별시,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2021.
- 조달청, 질의·해석사례,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OpenList.do?key=00049>)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202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사계약 길라잡이”, 2023.

부록 1.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

<“지방계약법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법규>

| | |
|----------------------|--|
| 지방계약법 | <p>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p>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p>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p> |

| | |
|------------------------------|---|
| | <p>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
| <p>지방계약법 시행규칙</p> | <p>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p> |

| | |
|--|---|
| | <p>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p> <p>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p> <p>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p> <p>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p>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p>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p> <p>⑥ 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p> |
|--|---|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text{공제금액} = \text{물가변동적용대가} \times (\text{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times \text{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록 2. 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규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법규

- 하도급 계약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하도급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상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법규>

| | |
|-------------|---|
| 하도급법 | <p>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p> |
|-------------|---|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법규

- 하도급 계약에 있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상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법규>

| | |
|-------------|--|
| 하도급법 | <p>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p>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
|-------------|--|

| | |
|------------------------|--|
| | <p>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p> <p>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약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p> <p>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약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 <p>하도급법 시행령</p> | <p>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p> <p>② 삭제 <2023. 9. 26.></p> |

| | |
|--|---|
| | <p>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p>④ 삭제</p> <p>⑤ 삭제</p> <p>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3. 9. 26.>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p>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삭제 <2023. 9. 26.> 4. 수급사업자의 동의서 <p>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8항제2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
|--|---|

3.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관련 법규

-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하도급법」 제2조 및 제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1호)에서 규정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법규>

| | |
|-------------|--|
| 하도급법 | <p>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p> <p>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p>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

| | |
|--|--|
| | <p>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p> <p>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p> <p>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p> <p>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p> <p>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p> <p>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p> <p>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p> <p>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p> |
|--|--|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p>하도급법 시행령</p> | <p>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p>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p>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p>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 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 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
| 표준연동 계약서 |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 연동계약서></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p> <p>◇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p> <p>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등

수급사업자 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대표자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기재사항 |
|-------------------------|----------------|
| 1. 목적물등의 명칭 | |
| 2. 대상 원재료 |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4. 연동요건 | |
|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비교시점: |
| 6. 연동주기 | |
| 7. 연동일 | |
| 8. 반영시점 | |
|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
| 10. 기타사항 | |

◇ 하나의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원재료별로 연동에 필요한 조건을 기재

※ 상기 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가 1개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상 원재료 개수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원자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 반영시점 |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원사업자 확인 | 수급사업자 확인 |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 |
|---|---|
| | <p>* 계약 특성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연동대상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대신 기재</p> <p>◇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p> |
| <p>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p> | <p>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II.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p> <p>III. 세부 가이드라인</p> <p>가. 신청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p> <p>나. 선정기준</p> <p>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p> <p>*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p> <p>**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p> <p>②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p> <p>③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p> <p>④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p> <p>⑤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p> <p>다. 선정절차</p> <p>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p> <p>○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p> <p>-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 ②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 ○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③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 ④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 <p>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p> <p>*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p> <p>(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 <p>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p> |
|--|--|

- ①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
- ②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I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발행인 김희수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